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삭제

❍ 설비 및 물품 파손시 사용자의 구체적인 변상 기준 마련(안 제14조제3항)
-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 신설

❍ 공연(행사)의 무단 영상 및 사진 촬영 방지 규정 신설(안 제17조제5항)

❍ 별표1 예술회관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일부변경
- “예술회관에서의 여성교육과 사회교육 및 예술회관의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사용료는 면제한다.” 삭제
- 기본시설 사용료의 면제 사항 추가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19:00)은 제외한다.” 추가

❍ 별표1 예술회관사용료 “부대설비 사용료” 일부 변경
- 조명효과 “파라이트 1회/개당 2,000원” 사용료를 “공연(행사)조명 1회 60,000원”으로 변경
-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의 사용자 부담 규정 추가
- “예술회관에서의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과 예술회관의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4. 10. 13 ~ 11. 1(20일간)

(2) 규제심사 : 2014. 9. 18(완료)

(3) 성별영향평가 : 2014. 9. 19(완료)

(4) 관련부서 합의 : 규제개혁추진단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설비를”을 “설비, 물품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허가 없이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회관사용료(제10조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table>
<tr><th>시설별</th><th>구분</th><th>단위</th><th>사 용 료</th><th>비 고</th></tr>
<tr><td rowspan="4">대공연장</td><td>예술공연</td><td>1회</td><td>400,000원</td><td rowspan="8">○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무대조명,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넬70개
・기본음향 : 일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19:00)은 제외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흥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td></tr>
<tr><td>일반행사</td><td>1회</td><td>450,000원</td></tr>
<tr><td>영화상영</td><td>1회</td><td>250,000원</td></tr>
<tr><td>흥행성 공연</td><td>1회</td><td>1,000,000원</td></tr>
<tr><td rowspan="2">소강당</td><td>일 반</td><td>1회</td><td>50,000원</td></tr>
<tr><td>예 식
(결혼식)</td><td>1회</td><td>30,000원</td></tr>
<tr><td>야외 공연장</td><td>공 통</td><td>1회</td><td>30,000원</td></tr>
<tr><td>전시실</td><td>공 통</td><td>1일</td><td>50,000원</td></tr>
</table>

◎ 부대설비 사용료

설비명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원	
조명시설	핀 스포트 라이트		1회	10,000원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공연(행사)조명		1회	60,000원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30,000원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녹음	DVD	1회	20,000원	
		CD	1회	20,000원	
	마이크	일반마이크(3개초과시)	1회개당	5,000원	가. 핀스포트, 무대조명설치 및 사용운용에필요한 운영 인력
		무선마이크	1회개당	20,000원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이동용콘솔	1회	30,000원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비트		1회	20,000원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이동무대		1회	20,000원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영사시설	영사기		1회	30,000원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
	LCD 프로젝터	대공연장	1회	30,000원	
		소강당	1회	20,000원	
특수장비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원	
	스모그기		1회	10,000원	○ 사용료 면제
기타시설	덧마루		1회	20,000원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고무매트(테이프 포함)		1회	50,000원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보면대(30개 초과시)		1회	1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제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설비, 물품 등을 ----------.
<신 설>	③ 제2항의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군수는 예술회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7조(입장의 제한)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허가 없이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1】 예술회관사용료(제10조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별	구분	단위	사용료	비 고
대공연장	예술공연	1회	400,000원	○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무대조명 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 넬 70개 ·기본음향 : 일반마 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 해 사 용 료 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초과사용 시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예술회관에서의 여성교육과 사회교육 및 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사용료는 면제한다. ○ 홍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일반행사	1회	450,000원	
	영화상영	1회	250,000원	
	홍 행 성 공 연	1회	1,000,000원	
소 강 당	일 반	1회	50,000원	
	예 식 (결혼식)	1회	30,000원	
야 외 공 연 장	공 통	1회	30,000원	
전 시 실	공 통	1일	50,000원	

개 정 안

【별표1】 예술회관사용료(제10조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별	구분	단위	사용료	비 고
대공연장	예술공연	1회	400,000원	○ 본 사용료에는 기본적인 무대음향·무대조명 난방시설 사용료를 포함 한다 ·기본조명 : 퍼 넬 70개 ·기본음향 : 일 반마이크 3개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하며, 1회 3시간을 기준 으로한다.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19:00)은 제외한다. 〈추 가〉 ※ 초과사용료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초과사용 시 - 당해사용료의 50% 가산 ·2시간이상초과 사용시 - 1회 사용료 전액 ○ 공연연습·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삭 제〉 ○ 홍행성 공연이란 오락적인 쇼, 대중 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일반행사	1회	450,000원	
	영화상영	1회	250,000원	
	홍 행 성 공 연	1회	1,000,000원	
소 강 당	일 반	1회	50,000원	
	예 식 (결혼식)	1회	30,000원	
야 외 공 연 장	공 통	1회	30,000원	
전 시 실	공 통	1일	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부대설비 사용료

설비명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원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조명효과	무빙라이트		1회/개당	10,000원	
	핀스포트		1회	10,000원	
	파라이트		1회/개당	2,000원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아래 설비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 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30,000원	
	녹음	카셋트	1회	10,000원	
		CD	1회	20,000원	
		MD	1회	20,000원	
		DAT	1회	20,000원	
		비디오	1회	20,000원	
	마이크	일반마이크(3개초과시)	1회/개당	5,000원	
		콘덴서마이크	1회/개당	10,000원	
		무선마이크	1회/개당	20,000원	
	이동용콘솔		1회	30,000원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비트		1회	20,000원	
	이동무대		1회	20,000원	
영사시설	영사기		1회	30,000원	
	LCD 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30,000원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다. 예술회관의 여성교육 및 사회 교육과 예술회관에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부대 시설 사용
		소강당	1회	20,000원	
특수장비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원	
	스모그기		1회	10,000원	
기타시설	덧마루		1회	20,000원	
	고무매트(테이프 포함)		1회	50,000원	
	보면대(30개 초과시)		1회	10,000원	

개 정 안

◎ 부대설비 사용료

설비명			단위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원	○ 1회란 당해 공연・행사・영화의 횟수를 말한다.
조명시설	핀스포트		1회	10,000원	
	공연(행사)조명		1회	60,000원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30,000원	○ 기기운영에 별도의 운영인력과 재료가 필요한 아래 설비의 사용에 소요되는 운영인력 및 재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핀스포트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나. 피아노 조율을 원할 경우소요되는 조율비용 다. 드라이아이스기 및 스모그기 사용에 필요한 운영인력 및 재료비 라. 덧마루의 설치 및 철거 마. 영사기 사용에 필요한 영사기사 및 소요되는 비용 (영사기사는 회관에서 지정) 바. 공연(행사)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인력 〈추 가〉 ○ 사용료 면제 가. 음악회만을 위한 음향반사판 사용 나. 영화상영만을 위한 영사기 또는 LCD 프로젝트 사용 다. 〈삭 제〉
	녹음	DVD	1회	20,000원	
		CD	1회	20,000원	
	마이크	일반마이크(3개초과시)	1회 개당	5,000원	
		콘덴서마이크	1회 개당	10,000원	
		무선마이크	1회 개당	20,000원	
	이동용콘솔		1회	30,000원	
무대시설	오케스트라비트		1회	20,000원	
	이동무대		1회	20,000원	
영사시설	영사기		1회	30,000원	
	LCD 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30,000원	
		소강당	1회	20,000원	
특수장비	드라이아이스기		1회	10,000원	
	스모그기		1회	10,000원	
기타시설	덧마루		1회	20,000원	
	고무매트(테이프 포함)		1회	50,000원	
	보면대(30개 초과시)		1회	10,000원	